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체 면적에 비례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
- 2) 이에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이하시 20% 이내, 10만㎡ 초과시 10% 이내로 정하

고 있어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초과~20만㎡미만일 때 10만㎡인

경우보다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가 작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2)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2만㎡ 또는 전체 구역 면적의 10%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06. ~ 12. 16.)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44조제1항제1호의2나목 중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내”를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생략)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 3. (생략)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③ ~ ⑥ (생략)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략)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
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
트 이내

2. ~ 4.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

가. (현행과 같음)

나. ----- 초

과하는 경우: 2만제곱미터
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
역 -- 중 넓은 면적 이내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9